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

2012년도 추경 2 회 일반회계 수산진흥과 ~ 수산진흥과

부서: 수산진흥과

정책: 해양수산업진흥(농림해양수산/해양수산·어촌)

단위: 해양수산업정책지원 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예산액	기정액	비교증감
수산진흥과	25,392,452 국 1,874,020 광 4,254,000 기 677,000 도 5,350,413 시 13,237,019	24,576,300 1,874,020 4,254,000 677,000 4,910,413 12,860,867	816, 152 0 0 0 440,000 376, 152
해양수산업진흥(농림해양수산/해양수산·어촌)	24,988,735 국 1,874,020 광 4,254,000 기 677,000 도 5,350,413 시 12,833,302	24,328,458 1,874,020 4,254,000 677,000 4,910,413 12,613,025	660,277 0 0 0 0 440,000 220,277
해양수산업정책지원	7,552,447 국 972,600 광 2,350,000 도 1,278,405 시 2,951,442	7,267,447 972,600 2,350,000 978,405 2,966,442	285,000 0 0 300,000 △ 15,000
어업경영지원	89,957	94,957	△5,000
201 일반운영비	18,040	8,040	10,000
○ 01 사무관리비 ○ 1.일반수용비	18,040 10,000	8,040	10,000 10,000
-두호동 멸치건조장 시설물 잔존가치 평가수 수료 5,000,000원*1식*2개법인	10,000	0	10,000
305 배상금등	0	15,000	△ 15,000
01 배상금등	0	15,000	△ 15,000
○연안 어업구조조정 소송패소배상금(2009년 추가분) 전액감 경정 0원	0	15,000	△ 15,000
지역소득원개발사업	571,540	581,540	△10,000
206 재료비	50,000	30,000	20,000
01 재료비 ○우수 수산물 홍보용 재료 구입	50,000	30,000	20,000
경정 50,000,000원	50,000	30,000	20,000
401 시설비및부대비	0	30,000	△30,000
01 시설비	0	30,000	△30,000
○수산물도매시장 건물 개보수 경정 0원	0	30,000	△30,000
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조성(보조)	4,000,000광2,000,000도600,000시1,400,000	4,000,000 2,000,000 600,000 1,400,000	0 0 0
401 시설비및부대비	3,985,000 광 1,992,500 도 597,750 시 1,394,750	3,146,900 1,573,450 472,035 1,101,415	838,100 419,050 125,715 293,335
01 시설비	3,511,154	2,673,054	838,100

정책: 해양수산업진흥(농림해양수산/해양수산·어촌)

단위: 해양수산업정책지원 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예산액	기정액	비교증감
○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 경정 2,521,654,000원*1식	0 501 654	0.070.054	^ 1E1 400
경상 2,521,054,000편*1억	2,521,654	2,673,054	△ 151,400
	광 1,260,827 도 378,248	1,336,527 400,958	△75,700 △22,710
	ム 882,579	935,569	△52,990
│	,	·	•
151,400,000원*1식	151,400	0	151,400
	광 75,700	0	75,700
	도 22,710	0	22,710
	시 52,990	0	52,990
│	838,100	0	838,100
-지게차외 22종 838,100,000원	838,100	0	838,100
	광 419,050	0	419,050
	도 125,715	0	125,715
	٨١ 293,335	0	293,335
405 자산취득비	15,000	853,100	△838,100
	광 7,500	426,550	△419,050
	도 2,250	127,965	△ 125,715
	۸l 5,250	298,585	△293,335
┃	15,000	853,100	△838,100
○냉동창고 장비구입			. 005 000
경정 0원 - 기정 605,200,000원	△605,200	0	△605,200
	광 △302,600 도 △90,780	0	△302,600
	도 △90,780 시 △211,820	0	△90,780 △211,820
┃	ΛΙ ΔΣ11,020	O	△211,020
경정 0원 - 기정 232,900,000원	△232,900	0	△232,900
	광 △116,450	0	△116,450
	도 △34,935	0	△34,935
	Al △81,515	0	△81,515
어업인복지문화센터(보조)	300,000	0	300,000
	도 300,000	0	300,000
402 민간자본이전	300,000	0	300,000
	도 300,000	0	300,000
	300,000	0	300,000
	300,000	O	300,000
│	300,000	0	300,000
000,000,000	도 300,000	0	300,000
	-		
수산자원관리 	3,730,096	3,811,756	△81,660
	국 728,220 광 330,000	728,220 330,000	0
	기 200,000	200,000	0
	도 665,280	665,280	0
	人l 1,806,596	1,888,256	△81,660
수산자원조성사업	67,416	83,416	△16,000
402 민간자본이전	48,000	64,000	△16,000
01 민간자본보조	48,000	64,000	△16,000

정책: 해양수산업진흥(농림해양수산/해양수산·어촌)

단위: 수산자원관리 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예산액	기정액	비교증감
○전복 먹이장 조성사업 경정 20,000,000원*3개소*80/100	48,000	64,000	△ 16,000
적조방제장비운영지원(보조)	90,000	90,000	0
	도 27,000		0
	Al 63,000	63,000	0
201 일반운영비	90,000		0
	도 27,000 시 63,000		0
01 사무관리비	ΔI 63,000 50,000		△37,000
	30,000		△37,000
-적조방제사업 장비임차 경정 0원 			△37,000 △11,100
	N C		△25,900
02 공공운영비	40,000		37,000
│	40,000		37,000
 -적조방제용 황토살포기 및 황토적치장 유지			
관리 경정 40,000,000원*1식	40,000	3,000	37,000
	도 12,000		11,100
	۸l 28,000	+	25,900
해수면(우렁쉥이)양식어장기자재공급(보조)	76,440		△65,660
	도 42,630 시 33,810		0 △65,660
400 DIZLTI 🖶 OL 🛪			
402 민간자본이전	76,440 도 42,630		△65,660 0
	Al 33,810		△65,660
01 민간자본보조	76,440		△65,660
│			
경정 109,200,000원*70/100	76,440	142, 100	△65,660
	도 42,630		0
	۸I 33,810		△65,660
어업질서확립	186,817	179,617	7,200
어업지도선 관리	186,817	179,617	7,200
308 자치단체등이전	18,000	10,800	7,200
08 기타부담금	18,000	10,800	7,200
○불법어업단속(과징금부과) 기관 보조금 지급 경정 1,200,000원*50건*30/100	18,000	10,800	7,200
어선현대화	2,163,700	1,997,000	166,700
	국 166,000	166,000	0
	도 599,300		50,000
Tarana a a a manantini a a	人 1,398,400		116,700
이업용유류비지원(보조)	776,700		166,700
	도 233,000 시 543,700		50,000 116,700
001 0141 H AL 7			
301 일반보상금	776,700		166,700
	도 233,000	183,000	50,000

정책: 해양수산업진흥(농림해양수산/해양수산·어촌)

단위: 어선현대화 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	예산액	기정액	비교증감
	시	543,700	427,000	116,70
12 기타보상금		776,700	610,000	166,70
○어업용 유류비 지원(수협대행:1,599척)				
경정 776,700,000원		776,700	610,000	166,70
	도 시	233,000 543,700	183,000	50,00 116,70
	\\I		427,000	
어업생산기반 및 연안 환경조성		9,846,012	9,543,975	302,03
	국	7,200 1,574,000	7,200	
	기	477,000	1,574,000 477,000	
	도	2,479,428	2,389,428	90,00
	시	5,308,384	5,096,347	212,03
소규모어항시설(보조)		4,128,089	3,828,089	300,00
,	도	1,236,000	1,146,000	90,00
	시	2,892,089	2,682,089	210,00
401 시설비및부대비		4,128,089	3,828,089	300,00
	도	1,236,000	1,146,000	90,00
	시	2,892,089	2,682,089	210,00
01 시설비		4,120,004	3,820,004	300,00
│ │ ○구만2리항 어항시설사업		300,000	0	300,00
-실시설계비 288.628.000원*3.94/100		11,372	0	11,37
글제글제비 200,020,000년 *5.54/100	도	3,412	0	3,4
	시	7,960	0	7,96
-시설비 288,628,000원*1식		288,628	0	288,62
	도	86,588	0	86,58
	시	202,040	0	202,04
		2,948,000	2,945,963	2,03
	광	1,474,000	1,474,000	
	도	442,200	442,200	
	시	1,031,800	1,029,763	2,03
401 시설비및부대비		2,938,000	2,935,963	2,03
	광	1,474,000	1,474,000	
	도	442,200	442,200	
	И	1,021,800	1,019,763	2,03
01 시설비		2,912,609	2,910,572	2,03
○장길리 복합낚시공원조성 사업				
경정 2,912,609,000원*1식		2,912,609	2,910,572	2,03
	광	1,474,000	1,474,000	
	도	442,200	442,200	0.00
	YI	996,409	994,372	2,03
해수욕장 기반확충		1,509,663	1,528,663	△ 19,00
	도	328,000	328,000	A 10 00
T	YI	1,181,663	1,200,663	△ 19,00
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		390,496	409,496	△ 19,00
201 일반운영비		223,725	242,725	△ 19,00
02 공공운영비		151,155	170, 155	△ 19,00
11	1	.3.,.30	5, .50	= .0,00

정책: 해양수산업진흥(농림해양수산/해양수산·어촌) 단위: 해수욕장 기반확충

단위: 해수욕장 기반확충 (단위:천원)

부서・정책・단위(회계)・세부사업・편성목	예산액	기정액	비교증감
○1.공공요금및제세 경정 105,800,000원 - 기정 124,800,000원	△19,000	0	△19,000
재무활동(수산진흥과)(농림해양수산/해양수산・어촌)	317,244	161,369	155,875
보전지출	317,244	161,369	155,875
반환금기타	317,244	161,369	155,875
802 반환금기타	317,244	161,369	155,875
02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	183,558	27,683	155,875
○2009년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 82,270,470원	82,271	0	82,271
○2010년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 71,866,120원	71,867	0	71,867
○2011년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 1,736,910원	1,737	0	1,737